

1. 개정이유

전통시장 용어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해당없음),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만,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검
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	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	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	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	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
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	-----	-----	-----	-----
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	-----	-----	-----	-----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	-----	-----	-----	-----
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	-----	-----	-----	-----
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	-----	-----	-----	-----
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	-----	-----	-----	-----
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	-----	-----	-----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	-----	-----	-----	-----
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면	-----	-----	-----	-----
·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	-----	-----	-----	-----
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	-----	-----	-----
실시할 수 있다.	-----	-----	-----	-----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1. -----	1. -----	1. -----	1. -----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	-----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기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기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기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기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기

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 ⑥ (생략)

준 및 절차)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만,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